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16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허성무 · 서미화 · 권향엽
조계원 · 민홍철 · 박선원
안도걸 · 김종민 · 곽상언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촉진위원회 운영·제도개선·개발지원·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개발지원·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의2·제13조의2·제13조의3 신설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22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1명을”을 “공동위원장 2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4의2. 제10조의2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

4의3. 제11조의2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의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결과를 해당 조치를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활성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실증 연계 지원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수출절차, 해외 현지 인허가·인증 및 기술기준 대응에 관한 상담·자문
4. 국제 전시회·상담회 참가 및 해외 홍보 활동
5. 해외 수주 및 판로 개척
6. 해외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 지원 제도와의 연계
7.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책의 내용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공급망 안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용 연료 및 핵심 기자재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급망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2. 공급망 안정화 관련 품목의 선정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금융·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조

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특구의”를 “연구개발특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특구의”를 각각 “연구개발특구의”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촉진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이하 “진흥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촉진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진흥특구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특구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진흥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특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진흥특구에 입주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증·상용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실증화 시설, 사업화 지원시설 및 공급망 관련 시설의 우선 사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특구의 활성화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실증·상용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특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특구의 관리
2. 진흥특구 활성화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3. 입주기관등에 대한 지원
4. 입주기관등 간 상호 연계 활동 촉진
5. 진흥특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대외협력·홍보
6. 그 밖에 진흥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특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 중 “아 닌”을 “아닌”으로, “업 무에”를 “업무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22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21422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guidelines. Each set is composed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These lines are evenly spaced vertically across the entire page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
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
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이행점검의 결과 및 그 보완대책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① (생략)

② 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제8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0조의2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

4의3. 제11조의2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6. (생 략)

<신 설>

7. ~ 10. (생 략)

③ 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⑤ (생 략)

제9조(제도개선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
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5.·6. (현행과 같음)

6의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

흥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 10.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장 2
명을-----

-----.

④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제도개선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제10조의2(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활성화하고, 소형모듈
원자로시스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
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실증
연계 지원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수
출절차, 해외 현지 인허가·

<신 설>

인증 및 기술기준 대응에 관한 상담·자문

4. 국제 전시회·상담회 참가 및 해외 홍보 활동

5. 해외 수주 및 판로 개척

6. 해외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 지원 제도와의 연계

7.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책의 내용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공급망 안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

제11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 지원) ① (생략)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실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u>로시스템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용 연료 및 핵심 기자재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공급망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u> <u>2. 공급망 안정화 관련 품목의 선정</u> <u>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u> <u>4.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u> <u>5. 그 밖에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제11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u>----- ----- ----- ----- -----
---	---

<신 설>

제13조(특구의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 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진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2(금융·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

례) ① -----

-----“연구개발특구”-----
-----.

② -----연구개발특구의-----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특구의
의-----

-----.

④ -----연구개발특구의-----

-----.

제13조의2(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의 지정 등) ① 이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촉진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

스텝 진흥특구(이하 “진흥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촉진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진흥특구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특구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

<신 설>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진흥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
흥특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
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진흥특구에 입주
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증·상용화 및 사업화 촉
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

2. 실증화 시설, 사업화 지원시
설 및 공급망 관련 시설의 우
선 사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특구의 활성화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실증·상용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특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특구의 관리
2. 진흥특구 활성화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u>3. 입주기관등에 대한 지원</u> <u>4. 입주기관등 간 상호 연계 활동 촉진</u> <u>5. 진흥특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대외협력·홍보</u> <u>6. 그 밖에 진흥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특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8조(보고·검사)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은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보고·검사)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은----- ----- ----- ----- -----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u>아</u> <u>닌</u>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u>업</u> <u>무</u> 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u>아닌</u> ----- ----- ----- <u>업무에</u> ----- -----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